# 「2023 청년커뮤니티 모이다(E:DA)」 참여팀 모집 공고

김제청년공간 E:DA(이다)에서는 김제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 기반 마련,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2023. 4. 5.

시자교유 및 형야테견

김제청년공간E:DA(이다)·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겨ル반표

#### 1. 사업개요

ロスヱつ

○ 사 업 명: 청년 커뮤니티 모이다(E:DA)

○ 활동기간: 2023. 5. ~ 11.(7개월)

○ 모집규모: 총8개(팀) 내외

○ 모집대상: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청년 소모임(단체 또는 법인)

○ 주요내용: 청년 커뮤니티 활동비 3백만원 및 네트워크 지원 등

# 2. 추진일정 ※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바묘시시

工品으下				- 결과 		사건교육 중 합국제를
'23. 4. 5.(수) ~'23. 4. 25.(화)	<b>→</b>	'23. 5. 3.(수)	<b>→</b>	'23. 5. 4.(목)	<b>→</b>	'23. 5. 17.(수)
온라인 신청		참여단체 발표심사	받고신사	홈페이지 공고		사전 오리엔테이션
(ieda.or.kr)		3 7 2 7 11 2 2 3 7 1		및 개별 통보		
						<b>↓</b>
	1				,	
정산보고서 제출		활동비 집행		교육 및 네트워킹		커뮤니티 활동
정산보고서 제출 '23. 11. 24.(금)까지	<b>←</b>	<b>활동비 집행</b> '23. 11. 12.(일)까지	<b>←</b>		<b>←</b>	커뮤니티 활동 '23. 5. ~ 11.
	<b>←</b>		<b>←</b>		<b>←</b>	

# 3. 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※일부 내용은 사업 추진 중 조정될 수 있음

구 분	지원 프로그램	지원내용
① 활동지원	과업수행비 지원 (행사개최, 홍보비, 강사비 등 <b>활동비 사용기준 참고</b> )	3백만원
②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	오리엔테이션 및 회계교육(1회) 중간 네트워킹 간담회 및 교육(1회)	청년 커뮤니티간 교류·협력
③ 홍보 지원	온라인을 통한 활동 홍보 지원	SNS 홍보 채널 운영

- 활동비 지원: 과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팀당 3백만원 지원
  - 예산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단체(법인) 명의 활동비 계좌로 지급
  -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지방보조금 관리기준'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

#### < 활동비 지원불가 항목 >

- 단체 구성원 인건비 및 강사료, 구성원 간의 내부거래, 가족과의 거래 불가
- 현금성 캐쉬, 포인트, 상품권, 기프티콘, 지역화폐 구입 등 현금 지출 불가
- · 사례지급용 물품(선물 등) 구입, 기념품, 시상금, 단순 친목비, 유흥·사행성 경비 불가
- · 수수료(이체 수수료), 자산취득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공요금 등 단체 운영비성 경비 불가
- O 활동분야: 지역 활력 및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
  - (예시) ·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·제작 (농촌체험, 지역문화·관광자원 홍보콘텐츠, 주민참여형 행사·공연 등)
    - ㆍ지역 청년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(원데이클래스, 체험학습 등)
    - ·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(환경개선, 공동육아, 농촌일손돕기 등)
- O 필수활동
  - 월 1회 이상 활동 후 활동보고서 제출(월별 활동보고서 양식 참고)
  - 단체 또는 구성원 개인 SNS에 활동사진 게시
  - ※ 필수해시태그: #김제시 #김제청년공간이다 #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

### 4. 모집 및 접수

- 모집규모: 8개(팀) 내외(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)
- 신청자격: **청년 5인 이상**으로 구성된 모임 (법인 또는 단체)
  - 구성원의 70% 이상이 청년(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)이어야함 (출생일 기준: 1983. 01. 01.~2004. 12. 31.)
  - 대표자, 구성원 70% 이상, 모임의 주소지 모두 김제시여야 함
  - 협약 전 반드시 고유번호증, 법인설립증을 제출하여야 함

#### ※지원 제한 대상※

-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
- 활동 지역이 김제시가 아닌 불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
- · 특정 정당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
- 일회성 행사. 교육. 여행이 목적인 경우
- 기타 커뮤니티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접수기간: '23. 4. 5.(수) ~ '23. 4. 25.(화) 18:00까지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김제청년공간이다, www.ieda.or.kr)
  - ※ 홈페이지 접속→청년지원→청년지원사업신청
- O 제출서류
  - 1. 참여신청서(활동·예산계획서 포함) 1부.
  - 2.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(참여자 전원) 1부.
  - 3. [선정 후]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.
  - 4. [선정 후] 참여자 전원 주민등록초본(생년월일, 병역사항 포함) 1부.
- 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하나로 통합하여 참여자 전원 자필서명까지 꼭 기재 후 제출

# 5. 심사 및 결과

- **발표심사** ※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- 심사일정: '23. 5. 3.(수) (예정)
  - 심사장소: 김제청년공간E :DA(이다)
  - 심사방법: 10분 발표, 5분 질의 응답
    - \* 발표자료: PPT 또는 PDF 제출(자유형식)
    - \* 제출기한: '23. 5. 2. (화) 15시까지(yk@ccei.kr)

○ **심사기준**: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

항목	배점	심사내용
적합성	30	활동의 공익성, 지역사회 연계성
활동구체성	30	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
예산타당성	20	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편성 여부
지속가능성	20	활동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 가능성
총계	100	

-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의 경우 ① 적합성 ② 활동구체성 ③ 예산타당성 순으로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
#### ○ 결과발표

- 발 표 일: '23. 5. 4.(목)
- 결과통지: 개별 통보 및 김제청년공간E :DA(이다) 홈페이지 공지 ※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# 5. 기타 유의사항

- O 필수사항
  - 선정 후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및 참여자 전원 주민 등록 초본(생년월일, 병역사항 포함) 제출
  - 오리엔테이션 팀당 1명 이상 참여
  - 매달 정기적인 활동 1회 이상 후 활동 보고서 제출
  - '23.11.12.(일)까지 활동 후 '23.11.24.(금)까지 정산보고서 제출
- 보 사업 참여 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활동비 환수및 선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
- 지원 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
-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※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'지방보조금 관련 법령'에서 정한 집행 절차를 준수함

② 참여자가 스스로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, 사업 포기서 제출 및 잔여 활동비는 전액 환수됩니다.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참여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 의 책임입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김제청년공간 E:DA(이다) 홈페이지 공지사항을(www.ieda.or.kr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관련 문의사항은 김제청년공간E :DA(이다) (☎063-545-2030, 209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1 활동비 사용기준

구분(비목)	세부내용			
유의 사항	<ul> <li>※ 각 항목별 증빙서류는 필수이며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</li> <li>※ 모든 예산은 활동 관련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규정 위반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</li> <li>○ 내부 구성원 강사료 및 인건비, 구성원 간의 내부거래, 가족과의 거래 불가</li> <li>○ 자산취득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 등 단체 운영비성 경비 불가</li> <li>○ 사례 지급용 물품(선물 등) 구입, 기념품, 시상금, 현금성 경비 집행 불가</li> <li>○ 금융수수료(이체 수수료),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집행 불가 ※자부담</li> <li>○ 선지급 불가 (선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사전협의 필수)</li> <li>○ 현금성 캐쉬, 포인트, 상품권, 기프티콘 등 현금 지출 불가</li> <li>○ 멤버십 적립 불가, 부가세 포함(단, 영리단체는 부가세 별도)</li> </ul>			
	내용	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<u>전문가 수당(강의, 공연 등)</u> ※ 지급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세 신고 필수 (1) 월 125,000원 이상의 경우, 8.8% 원천징수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공제 후 지급 (2) 1개월 동안 금액 분할을 해서 125,000원을 넘어도 8.8%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함		
	기준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가수당 지급기준 *참고2		
	대상	<u>커뮤니티 구성원을 제외한</u>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		
전문가 활용비 (강사, 공연)	증빙 서류	① 지출결의서 ② 이체확인증 ③ 프로필(이력서) ④ 신분증사본 ⑤ 통장사본 ⑥ 강의(활동)확인서 ⑦ 강의자료 또는 행사결과보고 ⑧ 증빙사진 ⑨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⑩참석자 서명부 * 기타소득세 발생 시: 국세·지방세 납부확인서		
	내용	원활한 커뮤니티 활동 운영을 위한 <b>자문(컨설팅)</b>		
	기준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가수당 지급기준 *참고2 • 1회(최대 3시간) 20만원 한도(기본 1시간 10만원, 추가 1시간 5만원) (1) 월 125,000원 이상의 경우, 8.8% 원천징수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공제 후 지급 (2) 1개월 동안 금액 분할을 해서 125,000원을 넘어도 8.8%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함		
7.07	대상	<u>커뮤니티 구성원을 제외한</u>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		
전문가 활용비 <u>(자문비)</u>	증빙 서류	① 지출결의서 ② 이체확인증 ③ 프로필(이력서) ④ 신분증사본 ⑤ 통장사본 ⑥ 자문확인서 ⑦ 자문보고서 ⑧ 증빙사진(멘토·멘티 얼굴 나오게) 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기타소득세 발생 시: 국세·지방세 납부확인서		

구분(비목)	세부내용				
	내용	커뮤니티 활동 홍보를 위한 비용 * 홍보물: 현수막, x배너, 리플렛, 포스터 등			
홍보 인쇄비	증빙서류	<계좌이체> ① 지출결의서 ② 이체확인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통장사본 ⑤ (내역없을시)견적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검수확인서(물품) ⑧ 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	<카드결제> ①지출결의서 ②신용카드영수증 ③(내역없을시)견적서 ④검수확인서(물품) ⑤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		
	주의사항	1. 현금성 캐시·포인트·상품권 등 현급 2. 기념품 제작 불가, 사례 지급용 물 3.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제작	물품(선물 등) 구입 불가(불인정)		
	내용	<b>커뮤니티</b>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	뜻 구입비		
물품 구입비	증빙 서류	<계좌이체> ①지출결의서 ②이체확인증 ③전자세금계산서 ④통장사본 ⑤(내역없을시)견적서 ⑥사업자등록증 ⑦검수확인서(물품) ⑧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 - 물품구입사유(활용 용도) 기입필수	<카드결제> ①지출결의서 ②신용카드영수증 ③(내역없을시)견적서 ④검수확인서(물품) ⑤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 - 물품구입사유(활용 용도) 기입필수		
	주의 사항	1. 현금성 캐시·포인트·상품권 등 현금성 가치를 지닌 물품 불가(불인정 2. 사례 지급용 물품, 기념품(선물 등) 구입 불가(불인정) 3.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★소모성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,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			
	내용	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공간, 장비,	물품 임차비용		
임차료	증빙 서류	<계좌이체> ①지출결의서 ②이체확인증 ③전자세금계산서 ④통장사본 ⑤견적서 ⑥임차계약서(임차사진 포함) ⑦사업자등록증 ⑧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 ⑨검수확인서	<카드결제> ①지출결의서 ②신용카드영수증 ③견적서 ④임차계약서(임차사진 포함) ⑤행사결과보고(행사사진 포함) ⑥검수확인서		
	주의 사항	<ol> <li>교통수단(버스, 택시, 렌터카, 공유이</li> <li>장기계약으로 진행하는 장비, 공긴</li> <li>★사용가능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, 변</li> </ol>	임대 불가(불인정)		

구분(비목)	세부내용				
	내용	원활한 활동 운영을 위한 식비 및 다과비용			
	기준	• 식 비 : 1인 10,000원 이하 • 다과비 : 1인 5,000원 이하			
	대상	활동 구성원 및 참여자(서명록 필수)			
회의비 (회의, 행사 등)	증빙서류	< 계좌이체>       < 카드결제>         ①지출결의서       ②신용카드영수증         ③전자세금계산서       ③회의록(회의사진 포함)         생통장사본       행사결과보고서(사진포함)         ⑤회의록(회의사진 포함) 또는       ④참석자 서명부         행사결과보고서(사진포함)       ⑤검수확인서(다과)         ⑥참석자 서명부       ③검수확인서(다과)			
	주의사항	1. 주류 불가,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 불인정 2. 인원대비 집행기준 초과 및 제한업종 지출 건 불인정			
	내용	활동 및 행사개최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, 행사 운영 외주용역 등			
	기준	견적금액			
외주 용역비	증빙 서류	<계좌이체> ①지출결의서 ②이체확인증 ③전자세금계산서 ④통장사본 ⑤견적서 ⑥사업자등록증 ⑦(영상제작) 용역계약서, 영상제작 결과보고 (행사운영) 용역계약서, 과업지시서(업체서식) ⑧(영상제작) 영상(메일 제출) (행사운영) 행사운영 결과보고(업체서식)	<카드결제> ①지출결의서 ②신용카드영수증 ③견적서 ④(영상제작) 용역계약서, 영상제작 결과보고 (행사운영) 용역계약서, 과업지시서(업체서식) ⑤(영상제작) 영상(메일 제출) (행사운영) 행사운영 결과보고(업체서식)		

# 참고2 전문가 수당 지급기준 및 관련사항

#### □ 전문가수당 지급기준

구분	단위	지급금액	지급대상	비고
자문료	B등급	10만원 /시간당	o 특정분야 및 사업관련 전문가	o 한도 20만원 o초과시간당 5만원
	A등급	30만원 /시간당	○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, 연구기관 임원급, 수석급, 박사학위 취득 후 9년(이와 동등 자격포함)이상 경력 ○이사급 이상 공사 및 대기업체 임원, 중소기업체 대표 ○공무원 실·국장, 기타 이에 준하는 자	o초과시간당 20만원
강사료	B등급	20만원 <i>/</i> 시간당	o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, 책임급, 박사학위 취득 후 2년, 석사학위 취득 후 5년,(이와 동등 자격 포함)이상 경력 o 중소기업체 임원, 4~5급 공무원 o 전문자격 소지자	o 초과시간당 15만원
	C등급	10만원 <i>/</i> 시간당	ㅇ상기 이외의 자	o초과시간당 8만원

구분	지급액	
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	초과 1시간 이상	최초 1시간의
(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 해당자)	(시간당)	<b>50</b> % 이내

#### □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(자문, 강의, 공연 등)

-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·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원천징수: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,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
- 관련규정: 소득세법 제21조, 제84조, 제127조, 제128조, 제129조, 지방세법 제103조의 13
- 원천징수세율: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8%,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
- 신고/납부: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**다음달 10일**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,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

#### 〈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(강사료)〉

구 분	지급금액	소득세	주민세	원천징수액	실지급액
120,000원 강사료	125,000원 미만 제외	125,000원 미만 제외	0원	120,000원	
이시표	250,000원	250,000원×8%=20,000원	20,000원×10%=2,000원	22,000원	228,000원

- 원천징수세(소득세, 지방소득세) : 강사료 250,000원 × 8.8% = 22,000원
-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: 250,000원 22,000원 = 228,000원
  - ※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% 20,000원 : 홈택스(또는 관할 세무서) 신고/납부 지방소득세는 0.8% 2,000원 : 위텍스(또는 관할 시군청) 신고/납부